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0년 10월 29일
- 회 부 일 : 2009년 11월 1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3개로 분법되어 2011. 1. 1.부터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시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세 세목에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를 면허세와 통합(등록면허세)하여 구세로 전환하며,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체계를 재편성함.(안 제4조)

나. 현행 시세 조례의 총칙규정을 기본조례로 이관하여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체납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재구성함

다. 상위법령 개정 및 부clr 표준안에 따라 징수건수를 반영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개선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안 제17조 및 부칙 제1조)

【서울특별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3개로 분법·시행됨(2011. 1. 1.)됨에 따라, 세목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부과·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세 세목에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를 면허세와 통합(등록면허세)하여 구세로 전환하며, 도 축세를 폐지함.(안 제6장제2절, 제7장제2절)
- 나. 신설·폐지·통합된 세목의 과세요건, 세율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함.
(안 제2장부터 제12장까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3개로 분법·시행(2011. 1. 1.)되어 국가 정책적 목적 등으로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이 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시세 비과세·감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현행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 나. 현행 2010. 12. 31.까지의 일몰기한을 2011. 12. 31.까지로 1년 연장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서울특별시세조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0. 10. 14. ~ 10. 28.) 결과

- 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 : 별첨.
- ②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견없음.
- ③ 「서울특별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검토의견

1) 서울특별시세조례 분법의 필요성

- 종전 단일법으로 구성된 「지방세법」을 분야별·기능별로 나누어 제·개정(2010년 3월 31일 제·개정, 시행일 2011년 1월1일)한 바, ①지방세에 관한 공통적·총칙적인 사항을 정리한 「지방세기본법」과 ②지방세의 종류 및 세목체계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③감면규정을 통합·정리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分法)되었음.
- 집행부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의회에 제출한 것임.

▶ 지방세 관련 법과 3개 조례 분법안

| 상위법령 | | | 서울특별시 조례 | | | |
|-------------|---------------------------------|---|--------------------|--|---------------|----------------------|
| 종전 (1개법) | | | 개정 (2010년7월 개정) | | 현행 (2개 조례) | 개정 (3개 조례) |
| 지방세법 | 제1장(총칙) | → | 지방세기본법 | | 서울특별시세조례 | → 서울특별시시세기본조례안 |
| |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 → | 지방세법 | | | → 서울특별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세조례(이하 '시세조례)」가 지방세의 기본적인 원리와 부과·징수·처벌, 세목, 비과세 및 감면 관련 규정을 모두 담고 있는 '단일조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시 불요불급한 조항의 개정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지방세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것임.
-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방세법」 정비를 위한 상위법령 분법 조치의 내용을 반영한 서울특별시세 관련 자치법규제·개정안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지방세 세목교환과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화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 변화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부 신중하지 못한 법 제·개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주요 사항별 검토

가.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이하 '기본조례안」)

- 본 제정안은 현행 「시세조례」와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의 총칙부분을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확장, 소멸 등 조세채권의 발생 및 변화 단계별로 배치하여 시민과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려는 것임.
- 「시세조례」와 「징수규칙」의 관련 조항을 「기본조례안」에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자 및 실무 공무원의 법령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
- 다만, 제정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안」으로 하고 있으나, '시세'는 '서울특별시세'를 용어정의 규정에 따라 축약한 용어¹⁾라고 할 것인 바, 제명의 대표성 및 명확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세 기본조례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1) 「서울특별시세조례」 제1조(과세의 근거)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표1) 현행 「시세조례」 및 「징수규칙」 과 「기본조례」 의 체계 비교

| 현행 「시세조례」 | 시세기본조례 |
|--|--|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부과징수 |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절 처분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제4장 보칙 |
| 현행 「징수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징수결정과 수납 제1절 징수결정 제2절 납세고지서의 작성 및 송달 제3절 시세의 수납 제4절 징수결정의 취소 및 경정 제5절 시세과오납금 제6절 세입마감사무 제3장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 제1절 징수유예 제2절 납세담보 제3절 납기마감과 독촉 제4장 체납처분 제1절 조세채권의 적기확보 제2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3절 압류 제4절 압류의 해제 제5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6절 매각 제7절 청산 제8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제9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정리 제10절 고액체납시세 징수사무의 특례 제5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2절 결손처분 제6장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제7장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제1절 지방세심의위원회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3절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제4절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 |



(1) 시·구간 세목교환

-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목을 간소화(16개 세목 → 11개 세목)하였고 이와 동시에 자치구와 세목교환을 명시하였음.

| 구 분 | 현행 : 16개 세목 | 분법 : 11개 세목 | | |
|--------------|--|--|----------|----------|
| 중복과세 통·폐합 | ① 취득세(시세) + ② 등록세(시세; 취득관련분) | ① 취득세(시세) | | |
| | ③ 재산세(특별시분+자치구분) + ④ 도시계획세(시세) | ② 재산세 <table border="1" style="font-size: small;"> <tr><td>특별시분 재산세</td></tr> <tr><td>자치구분 재산세</td></tr> <tr><td>도시계획세(시세)병합</td></tr> </table> | 특별시분 재산세 | 자치구분 재산세 |
| 특별시분 재산세 | | | | |
| 자치구분 재산세 | | | | |
| 도시계획세(시세)병합 | | | | |
| 유사세목통합 | ② 등록세(시세; 취득무관 및 정액분) + ⑤ 면허세(자치구세) | ③ 등록면허세(자치구세) | | |
| | ⑥ 공동시설세(시세)+⑦ 지역개발세(시세) | ④ 지역자원시설세(시세) | | |
| | ⑧ 자동차세(시세) + ⑨ 주행세(시세) | ⑤ 자동차세(시세) | | |
| 현행유지 | ⑩ 주민세 | ⑥ 주민세(시세) | | |
| | ⑪ 지방소득세 | ⑦ 지방소득세(시세) | | |
| | ⑫ 지방소비세(시세) ⑬ 담배소비세(시세) | ⑧ 지방소비세(시세) ⑨ 담배소비세(시세) | | |
| | ⑭ 레저세(시세) ⑮ 지방교육세(시세) | ⑩ 레저세(시세) ⑪ 지방교육세(시세) | | |
| 폐 지 | ⑯ 도축세(시세) | 폐지 | | |

- ※ · 등록세(시세) → 취득세로 통합
- 등록세(취득 무관) + 면허세 → 등록면허세(자치구세)로 전환
- 도축세(시세) 폐지
- 자치구세(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주민세 재산분) → 시세로 전환
- ※ 11세 세목 중 등록면허세·자치구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시세임.

▶ 주민세·지방소득세 변천과정

| 2010년이전 | | → | 2010년개편 | | → | 2011년 개정안 | |
|--------------|------|---|---------------|-----------|---|-----------|-------------------|
| 주민세 (시세) | 소득할 | → | 소득분 (시세) | 지방 소득세 | → | 소득분 | 지방 소득세 (시세) |
| | 균등할 | | 종업원분 (구세) | | | 종업원분 | |
| 사업소세 (구세) | 종업원할 | → | 균 등 분 (시세) | 주민세 | → | 균 등 분 | 주민세 (시세) |
| | 재산할 | | 재 산 분 (구세) | | | 재산분 | |

- 그러나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인 등록세(취득무관)의 자치구세 전환에 따른 자치구재원감소 문제점이 제기된 바, 집행부는 2011년 예산편성시 시·구간 세목교환에 따른 재원감소분을 재정보전금으로 보전할 방침이나 향후 지속적으로 당해 감소분에 대한 보전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표2 참조)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 재정수입 변동현황

▶ 변동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 자치구 수입 증감 | 시 수입 증감 | 구세 증감 (A) | 조정교부금 증감(B) (취등록세 50%) | 수입 증감 (C) (A+B) | 세목교환에 따른 송파구 순증가분 (D) | 자치구 실질보전 대상금액 (C+D) |
|----|---------------|---------|--------------|------------------------------|-----------------------|--------------------------------|------------------------------|
| | 등록세 (취득무관) | 사업소세 | | | | | |
| 계 | 2,750 | 2,850 | △100 | △1,375 | △1,475 | △42 | △1,517 |

| 현 행 | | 변경 | 개 정 후 | | 증 감 |
|-------------------------------|--------|-------|-------|-------|--------|
| 시세 | | | 1,375 | 시세 | |
| 등록세(취득무관)(A) | 2,750 | X | 사업소세 | 2,850 | 100 |
| 조정교부금(등록세 관련)(A)×50% | △1,375 | | 조정교부금 | - | 1,375 |
| 구세 | | 4,225 | 구세 | 2,750 | △1,475 |
| 사업소세(B)(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주민세 재산분) | 2,850 | X | 등록세 | 2,750 | △100 |
| 조정교부금(등록세 관련)(A×50%) | 1,375 | | 조정교부금 | - | △1,375 |

- 시세와 구세의 세목교환으로 구세 △100억 감소 (A)
- 조정교부금 재원인 등록세가 구세로 되어 교부금 재원규모가 △1,375억원 감소 (B)
- 자치구 입장에서는 세제개편에 따라 재정수입이 △1,475억 감소(A+B)가 예상되나, 송파구 증가분(세목교환에 따른) 42억원은 타 자치구로 배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자치구 전체적으로 1,517억원의 감소가 예상 됨.

※ 2010년도 예산기준

(2) 시세징수교부금 개정

| 현 행 | 제 정 안 |
|--|--|
| <p>제15조(시세징수교부금) ① 구가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월마다 그 처리비로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그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p> | <p>제17조(시세징수교부금) ①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5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해당 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

- (구) 「지방세법」 개정(법'10.7.5 시행, 영'10.7.6 시행)에 따라 자치구별 일률적 교부방식(시세 징수금액 3%)에서 징수건수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되 2013년 1월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징수교부기준을 변경할 경우 일부 자치구의 경우 세입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자치구간 상반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징수교부금 교부 현황

(단위 : 억원)

| 연 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계 | 2,340 | 2,405 | 2,516 | 2,649 | 2,475(예상) |

※ '10년도 시세징수예상금액 8조 2,515억원 × 3% : (징세금액 기준 방식)

▶ **현행 징수금액에 징수건수를 보완한 교부기준 적용시**

(단위 : 억원)

| 구청명 | 개정 전 (징수금액) | 개정 후 (징수금액+건수) | | | 증감액 | | |
|-----|----------------|----------------|-------|-------|-------------|-------|-------|
| | | 50:50 | 60:40 | 70:30 | 50:50 | 60:40 | 70:30 |
| 강 남 | 421 | 309 | 332 | 355 | <u>△112</u> | △89 | △66 |
| 중 구 | 242 | 151 | 169 | 187 | △91 | △73 | △55 |
| 노 원 | 57 | 96 | 88 | 80 | 39 | 31 | 23 |
| 강 북 | 32 | 49 | 46 | 42 | 17 | 14 | 10 |

※ 2010년도 예산발생효과액 기준

▶ **중랑 · 성북 · 강북 · 노원 · 동작 · 관악구 (6개구)의 의견제출**
(수정요구안)

- 부칙 제1조 단서 규정 삭제
- 개정 교부기준 2011년 시행

(의견)

- 징수금액 단일기준의 현행 교부기준을 징수건수를 반영하여 50:50으로 개선하는 원안에는 찬성
- 다만, 재정이 열악한 대다수 자치구 세입 증가를 위하여,
- 2013년 시행 유예 규정을 삭제하고, 2011년 개정안 즉시 시행

▶ **종로 · 중구 · 서초 · 강남(4개구)**

(수정요구안)

- 교부기준 변경 추진 반대, 현행 규정 유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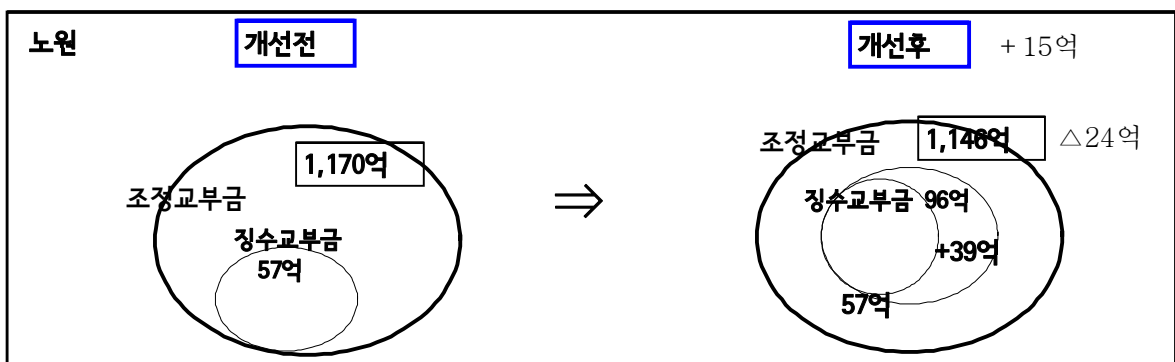
- 징수교부금 증가는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발생효과가 상쇄되어 실질적 증가 효과 미발생
- 재산세 공동과세 및 2011년 세목교환 등 요인으로 세수가 크게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 세입 감소제도의 연속적 시행은 대상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

- 결론적으로 징수교부금은 재원배분의 수단이 아니라, 자치구의 시세 징수업무대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고지서 발급·세원관리·체납처분 등 제반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교부되는 것이므로 징수금액 뿐만 아니라 징수건수라는 실제 징수처리 비용의 증감과 관련된 요소를 교부기준으로 감안할 수 있도록 한 본 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한편 부칙에서 규정한 시행일(2013년 1월1일부터)과 관련하여 자치구간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징수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심도 깊은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재정조정교부금간에 상충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음.

□ 징수교부금이 줄어드는 6개 자치구 중

- 강남, 중구, 서초, 종로 4개 불교부(不交付) 자치구는 징수교부금 감소분 만큼 전체 세입 일부감소
- 영등포, 용산 2개구는 징수교부금은 줄어들지만 조정교부금으로 그 감소분을 보전받고, 4개 불교부(不交付) 자치구 감소분을 배분받게 되어 전체 세입 일부증가

□ 나머지 19개 징수교부금이 증가하는 자치구는 징수교부금 증가액 만큼 조정교부금이 줄어들지 않고, 4개 불교부(不交付) 자치구의 감소액을 배분받게 되어 전체 세입 일부증가 효과 발생



- ※ 개선전 교부금: 총 1,227억원(조정교부금 1,170억원+ 징수교부금57억원)
- 개선후 교부금: 총1,242억원 (조정교부금 1,146억원 +징수교부금 57억원 + 불교부 단체 감소분 추가배분액 39억원)
- ⇒ 결과적으로 노원구의 경우 15억원 증가 효과(참고자료 참조)

※ 집행부는 일부 자치구 재정 충격 완화를 고려하여 지방소비세²⁾ 적용율이 5%(2010년 예산액 3,893억원)에서 10%로 인상에정인 2013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입장임. 그러나 근본적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세 징수사무소’ 설치·운영 등 시세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임.

(3)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통합·정비

| 현 행(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 | 제 정 안 |
|---|--|
| 제128조(위원회의 기능) ①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세의 이의신청 또는 자치구세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4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제134조(적부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서울특별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시세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심사청구 2. 시세의 과세예고에 대한 심사청구 3. 시세의 비과세·감면 반려에 대한 심사청구 | 〈삭제〉 |
| 제138조의2(과세표준심의위원회기능) ① 서울특별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삭제〉 |
| 제138조의6(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서울특별시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삭제〉 |

○ 본 제정안은 현행법령에 따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자치단체로 납입

▶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는 위원회

| 구분 |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 지방세심의위원회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
|---------|---|--|---|--|
| 법적근거 | 법 제69조의2제2항 | 법 제77조제1항 |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 법 제11조제6항 |
| 소속 | 각 지자체 | 각 지자체 | 각 지자체 |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
| 기능 | 채납자 정보공개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과세전 적부심사 | 시가표준액 결정 |
| 위원수(외부) | 9인(4인) | 15인(규정없음) | 10인(7인중 4인) | 15인(규정없음) |
| 위원장 | 부단체장 | 위원회 호선 | 시·군 : 부단체장 도 :담당국장 | 위원회 호선 |
| 임기 | 2년 | 2년 | - | 2년 |
| 임명권자 | 지자체장 | 지자체장 | 지자체장 | 지자체장 |
| 위원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법을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시·군의 경우에는 5급 이상)의 공무원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 지방세제 운영과 관련하여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4개의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통합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감축하는 한편, 지방세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집행부의 장이 위원을 임명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세 제도와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령이 아닌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로 비취질 수 있으므로, 국회의 법 개정이 요망된다 하겠음.

나. 「서울특별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시세조례안’)」

-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제1장(총칙)을 삭제하고 제2장과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16개 세목을 11개로 간소화하는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1) 현행 조례 체계와의 비교

| 현행 시세조례(제2장-제3장) |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제2장 보통세 제1절 취득세 제2절 등록세 제3절 주민세 균등분 제3절의2 지방소득세 소득분 제4절 자동차세 제4절의2 주행세 제5절 지방소비세 제6절 담배소비세 제7절 도축세 제8절 레저세 제9절 특별시분 재산세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2절 공동시설세 제1관 소방공동시설세 제3절 지역개발세 제1관 발전용수 제2관 지하수 제3관 지하자원 제4관 컨테이너 제4절 지방교육세 | 제1장 총칙 제2장 취득세 제3장 레저세 제4장 담배소비세 제5장 지방소비세 제6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2절 재산분 제7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2절 종업원분 제8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9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2절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3절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4절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5절 원자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6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0장 특별시분 재산세 제11장 재산세 과세특례 제12장 지방교육세 |

- 금번 개정안은 지방세의 종류를 세목별로 재편한 상위법령 체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지방세 세목 간소화

- 상위법령에 따라 통·폐합되는 세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첫째 ① 부동산·선박·차량 등의 취득 및 등기·등록에 대하여 과세되어 왔던 취득세(시세)와 등록세(시세)를 취득세(시세)로 일원화하고, ② 토지·건축물·주택 등에 대하여 과세되어 왔던 재산세(특별시분+자치구분) 및 도시계획세(시세)를 재산세(특별시분+자치구분+도시계획세(병합))로 통합하는 등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세목을 정비하였고,

- 둘째, ① 등록세 중 취득행위와 무관한 부분과 면허·허가 등 권리설정 행위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구세)로 통·폐합하고, ② 해당 지역의 특정자원 및 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목적세인 지역 개발세(시세) 및 공동시설세(시세)를 지역자원시설세(시세)로, ③ 자동차와 관련된 현행 자동차세(시세)와 주행세(시세)를 자동차세(시세)로 통·폐합 하는 등 그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합·정리하는 한편,
- 셋째, ① 현재 징수유예 상태인 농업소득세³⁾와 ② 재원조달 효과가 미흡한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과세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려는 것임.
- 이러한 세목체계의 단순성을 통한 세목간소화를 통해 납세협력 및 징세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세법」 개정을 주도한 중앙 정부의 입장이지만,
-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한 징수비율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된 세목 교환(특별시세의 자치구세 전환 등)은 실질적인 자치구 재원 감소로 인한 추가 대책 등 새로운 과제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세 체계와 재원배분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이 선행 되었어야 했을 것인 바, 금번 세목교환에 따른 재원배분왜곡효과에 대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세제 개편사항 등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안목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이 요망된다 하겠음.

다.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감면조례안’)」

- 본 개정안은 종전 「지방세법」의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부분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분리·독립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을 제정함에 따라, 이를 「감면조례안」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현행 「감면조례」에서 전국적 공통 적용 조문을 「지특법」으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 정비 차원의 전부개정조례안임.

3) 농업소득세는 현행 지방세법 제197조에 의거하여 농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04. 6. 25 경제장관간담회의에서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간('05~'09) 농업소득세 과세중단을 결정한 바 있음.

현행 감면조례

- 제1장 총 칙
-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제3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제4조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제5조 한센환자집단촌지원을 위한 감면
 -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제9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 제11조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제4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제12조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제13조 수출용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제14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제15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 제5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제16조 주택에 대한 감면
 - 제17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제1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 제19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제20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제21조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 제22조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23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 제24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제25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제26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제27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제28조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제29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제30조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감면
 - 제31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 제32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
- 제7장 보 칙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제7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제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제9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제10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 제11조(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제12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제1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제15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제16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제17조(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감면)
- 제18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 제19조(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 현행 「감면조례」에서 「지특법」으로 이관된 조문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을 포함한 총16개 조문으로서 그 중 3개 조문은 일부 이관(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등)되었음.(참고자료 참조)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던 종전의 「지방세법」⁴⁾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운용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법개정시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⁵⁾하였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특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⁶⁾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지방세 감면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4) 종전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의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형평에 현저히 어긋나거나 국가시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서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제4조(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3년의 기간 이내에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제의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선심성 감면 남발의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7)」은 심의 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훼손할 수 있는 바, 의회의 추천권 도입 등 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세 수입 및 감면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 2007년 | 2008년 | | 2009년 | | |
|--------------------------|--------------------|--------------------|------------------|--------------------|------------------|-------|
| | 금액 | 금액 | 전년대비 총감율 | 금액 | 전년대비 총감율 | |
| 세입 계 | 118,858 | 131,416 | 10.6% | 126,389 | -3.8% | |
| 시세 계 | 103,102 | 112,951 | 9.6% | 108,263 | -4.2% | |
| 구세 계 | 15,756 | 18,465 | 17.2% | 18,126 | -1.8% | |
| 비과세감면 계 (시세 비과세 감면 계) | 20,785 (20,517) | 26,762 (26,183) | 28.8% (27.6%) | 36,124 (35,289) | 35.0% (34.8%) | |
| 세입대비감면비율 | 17.5% | 21.4% | | 26.8% | | |
| 지방 세 법 | 비과세 | 8,953 | 10,424 | 16.4% | 14,247 | 36.7% |
| | 감 면 | 8,653 | 11,334 | 31.0% | 13,474 | 18.9% |
| 조특법 감면 | 944 | 1,513 | 60.3% | 3,438 | 127.2% | |
| 시세감면조례 | 1,967 | 2,911 | 48.0% | 3,931 | 35.0% | |
| 구세감면조례 | 268 | 579 | 116.0% | 835 | 44.2% | |

7)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 가. 도에 두는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 나. 시·군에 두는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참고자료]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에 따른 조정교부금 효과

(2010년 예산액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징수교부금 | | | | | 조정교부금 | | | 재정수입 증감 |
|-----|---------|------|-----------|-----|---------|-----------|---------------|--------|------------|
| | 현 행 | | 개선(50:50) | | | 당 초 | 개선 (50:50) | 증감액 | |
| | 교부금 | 격차 | 교부금 | 격차 | 증감 | | | | |
| 계 | 247,546 | | 247,546 | | 0 | 1,543,740 | 1,543,740 | △0 | |
| 총 로 | 13,552 | 4.3 | 9,698 | 2 | △3,854 | 5,300 | 5,300 | 0 | △3,854 |
| 중 구 | 24,238 | 7.6 | 15,074 | 3.1 | △9,164 | 0 | 0 | 0 | △9,164 |
| 용 산 | 9,716 | 3.1 | 8,185 | 1.7 | △1,531 | 33,393 | 36,247 | 2,855 | 1,323 |
| 성 동 | 5,569 | 1.8 | 6,502 | 1.3 | 933 | 66,278 | 66,610 | 332 | 1,265 |
| 광 진 | 5,238 | 1.6 | 6,546 | 1.3 | 1,308 | 65,617 | 65,563 | △53 | 1,255 |
| 동대문 | 5,482 | 1.7 | 6,907 | 1.4 | 1,425 | 76,710 | 76,666 | △44 | 1,380 |
| 중 랑 | 3,813 | 1.2 | 5,915 | 1.2 | 2,102 | 99,284 | 98,458 | △826 | 1,276 |
| 성 북 | 5,988 | 1.9 | 7,918 | 1.6 | 1,929 | 98,226 | 97,733 | △493 | 1,436 |
| 강 북 | 3,180 | 1 | 4,912 | 1 | 1,732 | 89,458 | 88,953 | △505 | 1,227 |
| 도 봉 | 3,530 | 1.1 | 5,878 | 1.2 | 2,348 | 82,547 | 81,414 | △1,133 | 1,215 |
| 노 원 | 5,719 | 1.8 | 9,594 | 2 | 3,875 | 116,960 | 114,624 | △2,336 | 1,539 |
| 은 평 | 4,365 | 1.4 | 6,691 | 1.4 | 2,326 | 99,743 | 98,772 | △971 | 1,355 |
| 서대문 | 4,543 | 1.4 | 5,903 | 1.2 | 1,360 | 79,197 | 79,098 | △99 | 1,261 |
| 마 포 | 8,623 | 2.7 | 9,435 | 1.9 | 812 | 64,812 | 65,378 | 566 | 1,378 |
| 양 천 | 7,406 | 2.3 | 9,522 | 1.9 | 2,117 | 69,432 | 68,684 | △748 | 1,369 |
| 강 서 | 8,027 | 2.5 | 10,472 | 2.1 | 2,445 | 85,396 | 84,486 | △911 | 1,534 |
| 구 로 | 6,995 | 2.2 | 9,146 | 1.9 | 2,150 | 80,142 | 79,376 | △766 | 1,384 |
| 금 천 | 4,501 | 1.4 | 5,263 | 1.1 | 762 | 69,837 | 70,250 | 414 | 1,175 |
| 영등포 | 18,347 | 5.8 | 14,969 | 3.1 | △3,378 | 19,018 | 23,943 | 4,925 | 1,547 |
| 동 작 | 5,567 | 1.8 | 6,963 | 1.4 | 1,397 | 71,964 | 71,888 | △75 | 1,321 |
| 관 약 | 5,247 | 1.7 | 7,828 | 1.6 | 2,581 | 95,908 | 94,731 | △1,177 | 1,405 |
| 서 초 | 22,723 | 7.1 | 18,201 | 3.7 | △4,522 | 0 | 0 | 0 | △4,522 |
| 강 남 | 42,135 | 13.3 | 30,910 | 6.3 | △11,225 | 0 | 0 | 0 | △11,225 |
| 송 파 | 15,705 | 4.9 | 16,179 | 3.3 | 474 | 2,871 | 4,155 | 1,283 | 1,757 |
| 강 동 | 7,337 | 2.3 | 8,935 | 1.8 | 1,598 | 71,649 | 71,412 | △237 | 1,362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이관 내역

※ 현행 38개 조문 중 25개 조문 존치(지 특법으로 16개 조문 이관 예정)_*3개 조문 일부이관

| 현행 조문 | 조 문 명 | 2011년 예정 | | 농특세 비과세 |
|-------|---------------------------|------------------|----------|------------|
| | | 감면조례 | 특례제한법 | |
| 제1조 | 목적 | ○(1조) | - | - |
| 제2조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 - | ○(29조) | ○ (2-3) |
| 제3조 |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 △(2조) (시각4급) | ○(17조) | ○ (1-6) |
| 제4조 |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 | ○(22조의2) | ○ (24) |
| 제5조 | 한센환자집단촌지원을 위한 감면 | ○(3조) | - | ○ (9) |
| 제6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4조) | - | - |
| 제7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 ○(20조) | - |
| 제8조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5조) (공연장) | ○(43조) | ○ (7) |
| 제9조 |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 | ○(42조) | - |
| 제10조 |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 - | ○(55조) | - |
| 제11조 |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6조) | - | - |
| 제12조 |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 | ○(70조) | - |
| 제13조 | 수출용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 ○(68조) | - |
| 제14조 |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감면 | - | ○(67조) | - |
| 제15조 |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 ○(7조) | - | - |
| 제16조 | 주택에 대한 감면 | - | ○(33조) | ○ (10) |
| 제17조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 | ○(31조) | ○ (11) |
| 제18조 |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 ○(74조) | ○ (12-6) |
| 제19조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8조) | - | ○ (13) |
| 제20조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9조) | - | - |
| 제21조 |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지식산업센터 등) | ○(12조) | - | ○ (5) |
| 제22조 |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 ○(83조) | ○ (20) |
| 제23조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 ○(10조) | - | ○ (19) |
| 제24조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11조) | - | - |
| 제25조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13조) | - | - |
| 제26조 |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5조) (현대화사업) | ○(84조) | - |
| 제27조 |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16조) | - | - |
| 제28조 |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15조) | - | - |
| 제29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14조) | - | - |
| 제30조 |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감면 | ○(17조) | - | - |
| 제31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 - | ○(14조) | - |
| 제32조 | 특별시분 재산세의 감면 | ○(19조) | - | - |
| 제33조 | 사무처리의 위임 | ○(20조) | - | - |
| 제34조 | 감면 제외대상 | ○(21조) | - | - |
| 제35조 | 감면신청 등 | ○(22조) | - | - |
| 제36조 | 감면자료의 제출 | ○(23조) | - | - |
| 제37조 |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 ○(24조) | - | - |
| 제38조 | 중복감면의 배제 | ○(25조) | - | - |